

2. 宅地所有上限에 관한 法律施行 規則中 改正令

建設交通部令 第32號 1995. 9. 4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건축물) 영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옥외환경오염방지시설
2. 건축법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
3. 건축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중 높이 6미터이상의 것

제5조 제1항 본문중 “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을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및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사본만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제9조의2 제1항 제1호중 “도시계획시설용 토지(시장용 토지를 제외한다)”를 “도시계획시설용 토지”로 하고, 동항 제7호 및 동조 제2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3항·제3조의2·제4조·제5조의2 및 제19조 본문중 “건설부령”을 각각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

제19조 제3호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뒷면중 “직할시”를 각각 “광역시”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제1면 내지 제3면중 “건설부”를 각각 “건설교통부”로 하고, 동서식 제4면중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토지관리과”를 “지적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제1면 내지 제3면중 “건설부”를 각각 “건설교통부”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초과소유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높이 6미터이상의 기계식주차장과 철골조립식주차장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주차장건설을 유도하고,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와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자가 이 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사업자의 등록증사본만 제출하면 되도록 등록절차를 간소화하며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건설교통부 제공〉

당신의 집이라면 부실공사 하겠습니까?